

1. 개정이유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(고시 제13조제7항제3호 및 동조제10항 관련) 일부개정에 따라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을 이용하는 경우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등 고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이용시 월 한도액 추가 산정 기준 마련(안 제4조의5)

나. 부칙 변경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해당사항 없음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

마. 적용시기 :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

「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」을 다음과 같이 개정·공고합니다.

2025년 2 월 28 일
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안

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에 제4조의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4조의5(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) 고시 제13조 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.

1.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
2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세부사항은 2025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u><신 설></u>	<u>제4조의5(통합재가서비스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) 고시 제13조제7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0항에 따른 월 한도액 추가산정 및 지급기준 등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.</u> <u>1. 통합재가서비스 급여비용 산정방법 및 지급기준</u> <u>2.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공단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.</u>